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640호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(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설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(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 기구의 지정 등)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

1. 지정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국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

2. 수행업무

-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
-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- 기본방침, 기본계획,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
-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·관리 지원
-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
-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
-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서비스 운영
-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구조화 지원
- 이주대책 수립 지원
-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
-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